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27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임의자 · 이인선 · 강승규
김기현 · 박성훈 · 김승수
신성범 · 조지연 · 임종득
최은석 · 배준영 · 서일준
신동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수·축산물과 같이 유통·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수·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

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4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선농·수·축산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각각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품대금등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이하 이 조에서 “상품대금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상품대금등 예치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품대금등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대금등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상품대금등을 직접 운용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상품대금등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대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리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로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등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로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별도로관리되는 상품대금등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과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관리하는 상품대금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⑨ 별도로관리하여야 하는 상품대금등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32조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직매입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지급기한에 관한 특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1.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40일
2.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0일

제4조(농식품 상품판매대금 등의 별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품판매대금의 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60”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본다.

1.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40
2.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 ----- ----- ----- ----- ----- ----- ----- ----- ----- <u>제8조, 제8조의2</u>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 ----- ----- ----- ----- <u>20일</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② -----

-----40일-----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선농·수·축산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각각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
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조의2(상품대금등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
금 및 상품대금(이하 이 조에
서 “상품대금등”이라 한다)의 1
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상품대금등 예치
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
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
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제2
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
입한 상품대금등을 직접 운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대금등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상품대금등을 직접 운용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상품대금등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대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⑦ 관리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등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대금등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과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⑨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상품대금등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u>제7조부터 제10조까지</u>, 제1 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 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 -----. 제35조(과징금) ① ----- ----- --<u>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 조, 제10조</u>-----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